

1. 개정이유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통합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서류 확인 등 수익사업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에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계획서 내용 포함

- 수익금 사용계획서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서류 통합할 필요가 있음

나.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근거 조문 마련

- 신청인이 제출하던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서류 확인을 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보훈부령 제 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중 “자금조달계획”을 “자금조달계획,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 재향군인회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로 한다.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 재향군인회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서류”를 “서류(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 재향

군인회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수익사업 관련 운영 시설·인력 및 자금조달계획,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 재향군인회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4. 그 밖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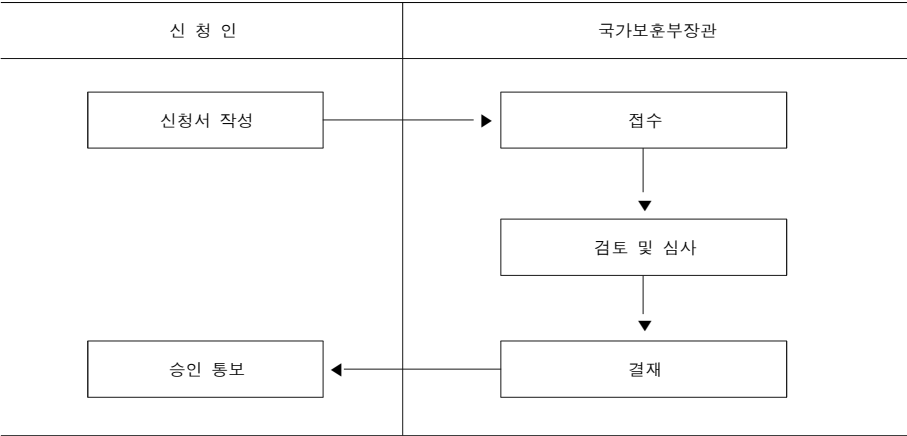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종전 수익사업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일 발급번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내용 및 그 사유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3.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서류(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 재향군인회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5.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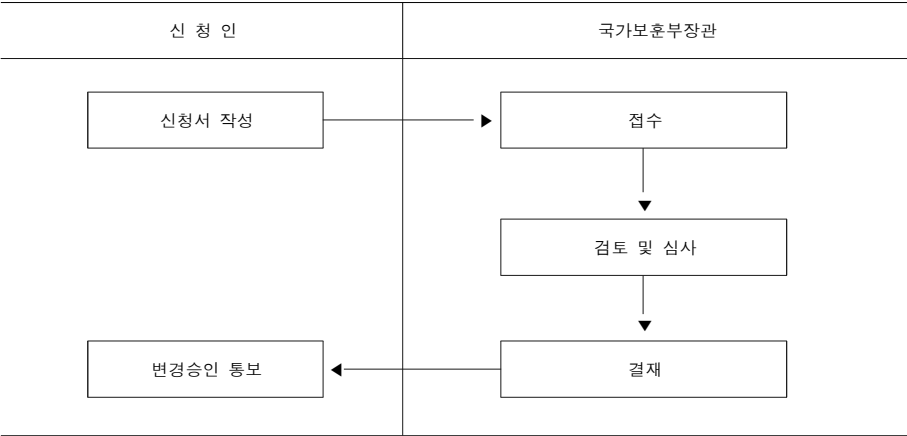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일	발급번호		
		사업장 소재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그 사유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 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 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 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 재향군인회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3. 그 밖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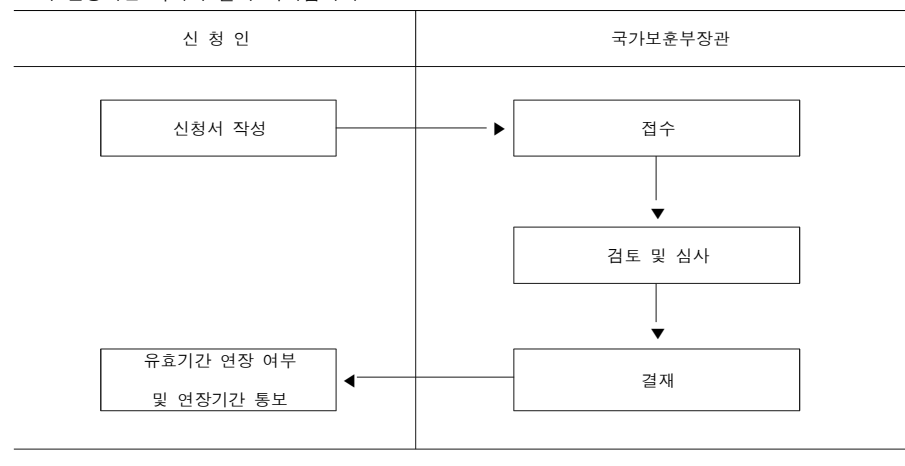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수익사업 관련 운영시설·인력 및 <u>자금조달계획</u>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생략)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① ----- ----- ----- ----- ----- ----- 1. -----, ----- ----- 자금조달계획,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 2. (현행과 같음)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5. (생략) 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4.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 재향군인회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	---

	<u>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 재향군인회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다)</u>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 ----- ----- ----- 서류(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u>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되, 재향군인회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다)</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